

의안번호	2214019
의 퇴 인	강선우의원
회 답 일	2025.12.10.
추계번호	25C5935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조의2 (간병에 관한 특례)	○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간병의 급여비용의 전부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함 1. 고령 또는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 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34세 이하인 사람 2. 34세 이전부터 돌봄대상가족에게 간호, 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기 시작해서 돌봄을 계속 중인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간호, 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돌봄대상 가족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0조의2 (간병에 관한 특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일부 수급권자에게 간병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없이 간병비용 전액을 의료급여기

금으로 충당하도록 명시하였으므로 추가재정소요는 간병비용 전액이 해당됨

- 의료급여는 수급 유형(1종, 2종)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상이하게 적용되나¹⁾, 개정안은 모든 수급자에게 본인부담률 0%를 적용하고자 함

○ 개정안에 따라 간병비용 전액을 응급의료기금으로 충당할 경우, 간병비용만큼 응급의료기금 지출이 증가하고 그에 비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현행법 제25조에 따르면, 의료급여비용의 재원은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대지급금, 부당이득금, 과징금 등으로 구성되며, 2025년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사업에 8조 6,882억원(국고보조율 75.7%)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다만, 개정안이 의료급여의 방법·절차·범위·한도 등 의료급여의 기준 및 수가 기준과 계산 방법 등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어²⁾ 현시점에 합리적인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어려움

- 간병 급여화에 따른 비용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급여 대상자와 단가(요양급여비용), 급여 형태 등이 정해져야 하나, 이를 임의로 가정하기 어려움
- 현행법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³⁾
- 참고로,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라 2015년부터 전국 병원급 이상 참여 의료기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시범사업)가 진행되고 있으나,⁴⁾ 대상자가 증가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및 시설 기준 확충이 선행되어야 할 수 있음
- 또한 정부는 2024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요양병원 환자 중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사업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간병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한시)”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예산 61억원을 배정하였음

1)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99.8만명(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65.6%),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35.3만명(23.2%)인데, ‘1종 수급권자’의 경우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2종 수급권자’의 경우 1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됨

2)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방법·절차·범위·한도 등 의료급여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3)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상한금액(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약제 및 치료재료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으로 고시하는 금액을 말함)보다 많을 때는 구입금액을 상한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함

4)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대상 병원 확대,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assembly.go.kr